

#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

## 관련 조항 확정 및 시사점

뉴텔리사무소

### I. CSR 관련 회사법 개정 및 시행

#### 1. CSR 조항 주요내용

- 일정 요건(매출액, 순이익 등)에 해당하는 회사 앞으로 CSR 정책 수립 및 최근 3개년 순이익의 2% 이상의 금액을 CSR 사업을 위해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회사법에 포함.
-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“기업의 사회적 책임”에 법률적 의무를 부여한 것이며, CSR에 포함되는 활동은 아래와 같음

#### CSR 프로그램

◆ 가난, 영양실조 퇴치	◆ 위생 및 식수 확보
◆ 여성, 고아 및 노인을 위한 주택 건설	◆ 생계 개선 프로젝트
◆ 환경 및 동물보호 활동	◆ 문화유적 보호
◆ 퇴역군인을 위한 혜택 제공	◆ 교육기관 내 기술개발 관련 연구시설 지원
◆ 올림픽 등 스포츠 지원	◆ 농촌 개발 프로젝트

## 2. 조항 공포('14. 2. 27일) 및 시행('14. 4. 1일)

- 인도 중앙정부는 인도 회사법(Companies Act) 제135조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(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)에 적용될 시행령을 오는 '14. 4. 1일부터 시행할 예정
- CSR 관련 시행령은 '13. 9월 초안이 발표된 이후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'14. 2. 27일 공포되었으며, 의견수렴과정 중에서 외국회사의 지점, 현장사무소에도 CSR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음.

## II. CSR 조항 상세내용

### 1. 적용대상

-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
  - 순자산 50억 루피 이상
  - 매출액 100억 루피 이상
  - 순이익 5천만 루피 이상
- CSR 규정 상 아래는 “순이익”에서 제외
  -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
  - 다른 인도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액
- 연속되는 3 회계연도 동안 상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CSR 여타 조항 적용 유예

## 2. 운영방법

- CSR 활동은 등록된 단체, 회사 또는 그 회사의 관계사가 설립한 비영리 회사가 수행할 수 있음.
- 비영리 회사가 회사 및 관계사에 의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, 유사한 프로젝트에 대한 3년간 수행실적(Track Record)이 있어야 함.
- 회사는 CSR 단체가 수행할 프로그램을 지정하여야 하며, CSR 지출액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체계를 구축해야 함.
- 회사는 중간에 Agency를 두고 CSR를 수행할 수 있으나, 그 비중은 CSR 총 지출액의 5%를 초과할 수 없음.
- CSR활동을 다른 회사들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으나, 각 회사의 CSR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는 개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.

## 3. 활동 조건

- CSR은 인도 내 수행한 것만 인정
- 회사의 고용인 및 그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활동은 불인정
- 정당(Political Party)에 직·간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불인정

## 4. CSR 위원회

- 회사법에 따라 CSR 의무가 부여된 회사의 경우, 3인 이상의 이사(이 중 적어도 1명은 사외이사)로 구성된 CSR위원회 구성
  - 비상장 기업은 사외이사 임명 불필요
  - 이사회 구성원이 2명인 사기업은 CSR위원회도 2인으로 구성 가능

- 외국회사는 2명 이상의 인원으로 CSR위원회를 구성하며, 대표자 1인을 포함한 외국회사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으로 구성

## 5. 보고

- CSR를 적용받는 회사는 Board's Report에 CSR 보고서를 포함해야 함.(‘14. 4월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)
- 외국회사의 경우는 기업등록소(Registrar of Companies)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에 CSR 보고서를 첨부
- 또한, CSR 정책, 회사가 운영하는 CSR 프로젝트, 수행에 관련한 내부 검토, CSR 보고서 등을 회사 Web site에 게시

## Ⅲ. CSR 관련 시사점

### 1. 건설회사 등 한국기업의 CSR 조항 적용 대비

- CSR 확정안은 동 조항을 외국회사의 지점 및 현장사무소에도 확대 적용하게 되었기 때문에, 인도에 지점 또는 현장사무소 형태로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, 특히 비교적 매출 규모가 큰 건설회사의 현장사무소의 경우에는 당해 CSR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동 조항의 면밀한 검토 필요

### 2. CSR 활동 관련산업에 대한 신규 사업기회 활용

- CSR 시행에 따라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CSR 활동에

지출해야 하는 바,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보호, 농촌개발 등 관련산업 앞으로는 신규 자금유입이 예상되며, 특히 신재생 에너지, 폐기물처리사업 등은 환경 관련으로 SOC, 주택 건설 사업 등은 농촌개발 관련으로 새로운 성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